

2014. 12. 23(화)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4년 12월 23일(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3개년 계획

문의 :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 열 과장(☎2110-1520)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정복덕 사무관(☎2110-1521)

빅데이터, 수집 시부터 철저히 비식별화 조치해야

- 방송통신위원회,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안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월 23일, 빅데이터 처리·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자의 사전동의(Opt-In)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빅데이터 산업 특성상 사전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빅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적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지침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연구반 운영 및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공개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사업자 등에게 새로운 의무나 제한을 가하지 않도록 하되,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술적·절차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다른 정보로 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가 선행된다면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자들의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법령 내에서 공개된 정보 등을 합법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데이터의 수집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하였다 하더라도 조합·분석 단계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수집출처 및 정보활용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특정 개인의 사상 등 민감정보 생성이나 이메일·문자 통신 내용의 이용 등은 금지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중 사업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시행 후 빅데이터 시장 현황 등을 파악하여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발전간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이라고 평가하고,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인터넷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1.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2.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전문

(붙임1)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 수집 시부터 개인식별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제3조·제4조·제5조·제10조)

- o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 수집·저장·조합·분석 및 제3자 제공 등 가능

②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 등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제4조·제5조·제9조)

- o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비식별화 조치 후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수집 출처 및 정보 활용 거부권 행사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 (개인정보 취급방침) 비식별화 조치 후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 등을 이용자 등에게 공개하고 '정보 활용 거부 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조치
- (수집 출처 고지) 이용자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 시 '수집 출처·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권'을 이용자에게 고지

③ 개인정보 재식별시, 즉시 파기 및 비식별화 조치(제3조·제6조)

- o 빅데이터 처리 과정 및 생성정보에 개인정보가 재식별 될 경우, 즉시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토록 함

④ 민감정보 및 통신비밀의 수집·이용·분석 등 처리 금지(제7조·제8조)

- o 특정 개인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의 생성을 목적으로 정보의 수집·이용·저장·조합·분석 등 처리 금지
- o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통신 내용의 수집·이용·저장·조합·분석 등 처리 금지

⑤ 수집된 정보의 저장·관리 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시행(제3조제2항)

- o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적용

* (보호조치)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 설치, 접속 기록에 대한 위·변조 방지 조치,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등 악성프로그램에 의한 침해 방지 조치

(붙임2)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전문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개된 개인정보 또는 이용내역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설정된 체계에 의해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1. “공개된 정보”란 이용자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공개 대상이나 목적의 제한 없이 합법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이용내역정보”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기록, 인터넷 접속정보, 거래기록 등의 정보를 말한다.
3. “정보 처리시스템”이란 공개된 개인정보 또는 이용내역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설정된 체계에 의해 조합·분석 등 처리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충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정보, 이용내역정보를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하여야 한다.
 2. 비식별화 조치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조합·분석 등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비식별화 조치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정보 처리시스템에 저장·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2.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3.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악성 프로그램에 의한 침해 방지 조치
 4.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 제4조(공개된 정보의 수집·이용)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를 비식별화 조치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허용하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집·이용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공개된 정보의 수집 출처,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하는 사실 및 그 목적을 이용자 등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등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의 목적
 3.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제5조(이용내역정보의 수집·이용)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 이용내역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내역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되는 사실 및 목적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내역정보의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검색프로그램 등에서 이용자 또는 검색프로그램 등 공급자가 설정해 놓은 이용내역정보의 수집 거부 선택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새로운 정보의 생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비식별화 조치하여 수집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해 조합·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다만, 새롭게 생성된 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즉시 파기하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처리 방법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민감정보 생성의 금지) 특정한 개인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이용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생성을 목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통신 내용의 조합, 분석 또는 처리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송중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통신 내용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의 이용)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비식별화 처리된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자신의 서비스 제공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이용된다는 사실 및 그 목적을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제3자 제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 정보의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비식별화 처리된 공개된 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 정보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제11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